

제145회(정례회)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부록)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목 차

1. 서울특별시종로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심사보고서	2면
○서울특별시종로구명예구민증수여조례안 심사보고서	4면
2. 서울특별시종로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6면
3. 서울특별시종로구공공시설내의신문·복간판매대·매점및식음료용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7면
4. 서울특별시종로구장애인동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8면
5. 서울특별시종로구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9면
6. 서울특별시종로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0면
7. 서울특별시종로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2면
8. 서울특별시종로구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조례안 심사보고서	14면
9. 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 및 용도지역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 결과보고서	17면
10. 2004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19면
11. 200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	21면
12. 2004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34면
13. 2004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시민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39면
14. 2004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64면

서울특별시종로구통합방위협의회 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심사보고서

2004. 12. 15.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
시민행정위원회

1. 審査經過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4년 11월 19일 · 종로구청장 원안 제출

나. 회부일자 : 2004년 11월 22일 원안 회부

다. 상정일자 : 제146회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 정례회

제4차 시민행정위원회(2004. 12. 15) 상정·의결

2. 提案說明의 要旨 (제안설명자 : 행정관리국장 황 의 진)

가. 제안이유

○통합방위법 제5조,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구 통합방위 협의회, 통합방위지원본부 등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방위태세의 확립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기 능 : 통합방위 대비책, 통합방위작전·훈련의 지원대책, 국가방위 요소의 효율적 육성·운용 및 지원대책 규정 (안 제2조)
- 구 성 : 의장(구청장)1인, 부의장2인을 포함 60인 이내로 구성(안 제3조)
- 회 의 : 분기 1회 정기회, 의장이 필요시 임시회 소집 (안 제8조)
- 통합방위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 (안 제10조)

3. 專門委員 檢討報告의 要旨

(보고자 : 전문위원 박 성 열) — 별첨 검토보고서 참조

4. 質疑 및 答辯 要旨 (생 략)

5. 討 論 要 旨 (없 음)

6. 修 正 案 의 要 旨 (없 음)

7. 審 査 結 果 : 원안가결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함)